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 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03. 7. 11.

발 의 자 : 정의화·엄호성 의원

찬 성 자 : 36인

수정이유

지난 7월 8일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 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음.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7월 9일 정보위에서 김대중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의 핵 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따라서 1998년 4월 이후 북한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 그 돈이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기를 문란케 하고 이적행위

에 해당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그 진상을 특별검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여 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다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수정주요골자

가. 제명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으로 수정함.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중 제1호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한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으로 하고, 제2호를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핵 개발을 위한 고품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그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

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하여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 및 은폐의혹사건으로 함.

다. 수사기간은 60일에서 최초 90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후 30일 연장가능 하도록 함.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안 제2조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

1.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
2. 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핵개발을 위한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그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하여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

원, 감사원 등의 비리 및 은폐의혹사건

안 제9조제2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안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안 제명) <u>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u></p> <p>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호의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다.</p> <p>1. <u>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u></p> <p>2. <u>제1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의 비리의혹사건</u></p>	<p>(안 제명) <u>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과북한핵개발자금전용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u></p> <p>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 ----- ----- -----.</p> <p>1. <u>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하여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사건</u></p> <p>2. <u>정부가 1998년 4월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핵개발을 위한 고풍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u></p>

<신 설>

제9조(수사기간) ①(생 략)

② 특별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2조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신 설>

인지하여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그 돈이 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도 남북협력기금, 현대아산,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을 통하여 북한에 각종 명목의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한 의혹사건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의 비리 및 은폐의혹사건

제9조(수사기간) ①(원안과 같음)

② -----

----- 90일 -----

-----.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